

2022년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증 발급 대상자 공고(1차)

「2022년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증 1차 발급 대상자 명단」과
「특례대상자 자격증 발급 연장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자격증 발급 대상자

- 대 상** : 「수의사법」 제16조의2에 따른 자격증 발급 대상자(「붙임1」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알림소식” 메뉴 게시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www.vt-exam.or.kr)의 “공지사항” 메뉴 게시 * 합격자 대상 안내 문자 전송

2. 이의신청

- 이의신청 기간** : 2022. 4. 21. (목) 18:00 ~ 5. 6. (금) 18:00
* 이의신청 제출기한 이후 제출 시 인정 불가
- 제출서류** : ① 동물보건사 자격증 발급 이의 신청서 「붙임2」,
② 이의 증빙·참고 서류(필요 시)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info@vt-exam.or.kr)
 - 이메일 제출 후 유선으로 제출 사실 알림(☎ 031-702-8686)

3. 특례대상자 자격증 발급일 연장('22.5.20일 까지)

- 연장사유** :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대상자의 경우, 제출 서류 검토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
- 제출기한(연장)** : 4.21일에서 5.20일까지로 발급일 연장

4. 유의사항

- (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일은 동일하나 자격증 수령 시간은 지역별, 우편 사정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의신청) 이의신청자는 이의 내용이 잘 표출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증빙·참고 자료를 기한 내(5.6일) 제출 요청
- (특례대상)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대상자는 '22.5.20일 자격증 발급 대상자를 공고할 계획
- (기타문의) 기타 문의사항은 농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25) 문의